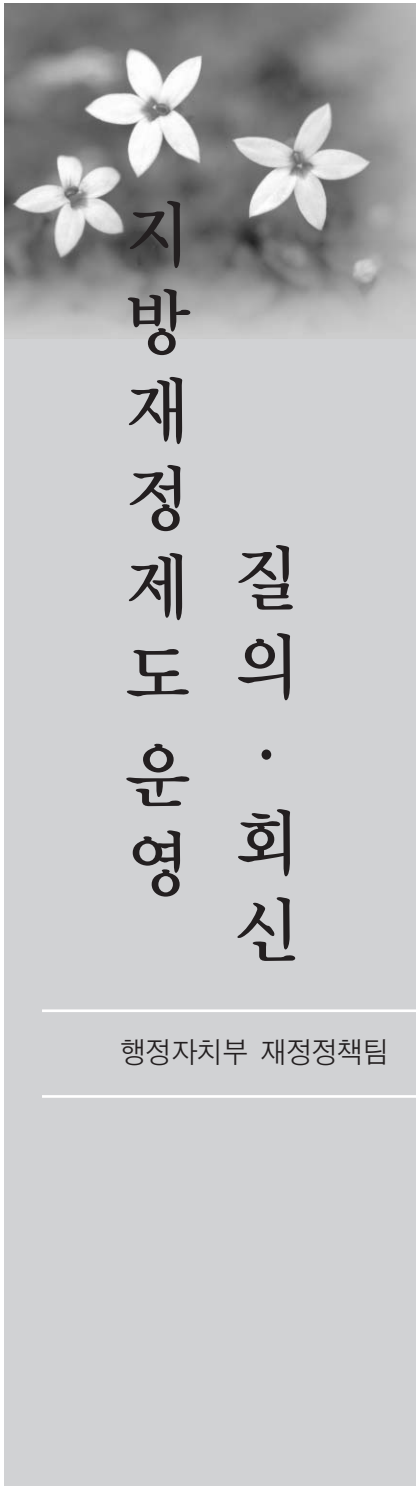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1. 침출수처리시설 계약의뢰 관련 질의

【질 의】

○ 현 황

- 공사명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 사업비(설계예산액) : 1,000,000천원
 - 기계설치비: 300,000천원
 - 기자재구입비: 700,000천원

○ 진 행

- 침출수처리시설 발주의뢰
 - 기계설치 및 기자재 구입을 일괄하여(제한경쟁) 조달청에 의뢰 본 군에서 상기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물품제작구매설치” 아닌 “공사”로 일괄하여 조달청에 제한경쟁 계약 의뢰한 사항이 계약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신】

귀질의 내용은 어느 부분에 대한 적법성여부인지 불분명하여 답변을 정확히 하기가 곤란하나, 공사인지 물품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구분 여부는 기계설치



에 해당되므로 전문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자재구입과 통합발주 가능 여부는 현장상태 등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 수의계약에 관련 질의

【질 의】

- 2005.3.22일 사회복지법인 ○○의 집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록을 필하고 공장을 인수한 사회복지법인(조달청 미등록)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을 요구할 경우
 1.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제8호 마목에서 규정한 정당한 수의계약대상 법인인지요?
 2. 정당한 법인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라”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질의

【질 의】

- 우리청에서 “○○학교 운동장 배수로정비 및 기타공사” 발주후 04.12.20자로 계약을 체결 후,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04.12.30자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2005년 1월 교육부의 민자유치사업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개축대상학교로 선정,
 - 학교측은 향후 개축이 정상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공사 중지를 요청(05.3.31자로 중지)

-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하여야 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개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학교에 의견조회
- 학교측은 공사의 계약 해지를 요청. 위와 같은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위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등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변 환경 등의 변화로 발주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시공을 중지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제한경쟁입찰 관련 질의

【질 의】

- 우리시에서는 지역시내버스업체의 운송원가계산 용역을 회계법인에 의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계사 사무실을 제외하고 회계법인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 신】**

- 입찰의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동 조문에는 회계법인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귀 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대기오염전광판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질 의】**

질의 1) 대기오염도와 환경보전을 위한 시정홍보 등을 표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대기오염전광판을 옥외광고물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 예상소요액 : 2억원

－ 주요내용 : LED전광판, 구조물(철골 또는 콘크리트), 운영소프트웨어

질의 2) 상기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의 물품 제조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로 보는 것이 더 좋은지?

질의 3)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가장 적절한 발주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의2에는 제9조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정품목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별도로 부가되는 사업이 없다면 옥외광고물관리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사업자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3 에 대하여) 발주방법은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

서 선택하는 것임

6. 실적인정여부 관련 질의

【질 의】

○ ○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보유업체(공동도급가능)로서 600톤/일 처리능력 시공실적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의 실적을 보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사는 200*년 ○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B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계약 후 몇 개월이 경과한 후에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이행 지분을 만큼 시공실적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61호) 별표 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 또는 단독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 경우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해당면허(등록) 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라면 면허등록 이후 시공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서류(공정표 등)를 검토하여 발주처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



7.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적용방법 관련 질의

【질 의】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낙찰율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질의 요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당현장은 낙찰율 : 93%(적격심사 기준의 가격점수 예정가 대비 86.745%)
 -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률인 93%에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예정 금액의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찰률 보다 낮은 행자부 적격심사 기준인 86.745%에서부터 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경우 낙찰율이란 입찰당시 귀하가 낙찰받은 낙찰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 실적제한 경쟁입찰의 실적인정기관에 관한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2005.2.2)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 상기 회계통첩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실적제한경쟁 입찰에 있어서 실적인정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발주공사실적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실적 및 민간발주공사(SOC사업 등)실적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 신】

- 회계통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 중 적용할 법령·규정이 없거나, 자주 반복되는 오류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실적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9. 계약 성립에 관한 질의

【질 의】

- 우리 현장은 ○○개발공사로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수주한 곳으로 전기공사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 ○○개발공사 일반시방서상 품질조건(자격)에 지급 및 사급으로 발주되는 지구의 수배 전반은 품질 보증 인증(ISO) 및 우수단체 표준인증(EQ)를 획득한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발공사 특기시방서상 제작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 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ISO9001 또는 ISO9002,



ISO14000계열, 우수EQ 등의 단체 품질 보증요건을 만족하도록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 보증 계획서는 ISO규정에 의한 품질 보증절차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장 설명시 수배전반 제작에 필요한 도면 및 도시개발공사 일반, 특기시방서를 배부해 주었고 자체 특기시방을 작성하여 설명을 하고, 일주일 후 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 업체를 낙찰사로 잠정 내정하게 되었습니다.
- 낙찰 예정사의 서류를 검토중 일반시방서상 명시된 우수단체 표준 인증(EQ)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수단체 표준인증을 획득치 못한 사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나 낙찰예정사에서는 입찰조건이 아니고 제작 및 납품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납품시까지 우수단체 표준인증(EQ)을 획득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 예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 신】

- 시방서는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一般總則事項)이 표시되는 것으로 설계서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발주처는 시방서대로 공사가 시공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시공조건이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만 해당되는 것임.

10.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시 업무승계 관련 질의

【질 의】

- A사와 B사가 50:50 공동수급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설계용역(용역금액: 1,003백만원)을 수행중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A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C사가 연대보증인 입니다.
- B사는 입찰공고시 참여업체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나 입찰당시 PQ평가 점수보다 B사만의 참여기술자 변경후의 PQ평가 점수가 낮은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A사 업무 승계는 누가 되는지 ?
 2. 입찰당시 PQ평가 점수도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 제12조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이행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처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입찰당시 「PQ평가 점수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당해 계약이행 요건”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입찰참가자격(공고) 질의

【질 의】

○ 저희 시에서 업무를 대행하고자 분뇨처리장 저류조 퇴적물 위탁처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나 입찰참가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 참 고

- 예산과목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사업명 : 분뇨처리장 저류조 퇴적물 위탁준설 용역
- 예산액 : 187,000,000원

갑설) 공사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도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을설) 용역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적격심사도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병설) 본건은 공사이므로 예산과목이 잘못 되었으므로 추경예산에 과목을 수정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당초 : 분뇨처리장 저류조 퇴적물 위탁준설 용역
- 수정 : 분뇨처리장 저류조 퇴적물 준설공사

【회 신】

○ 오히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동 법령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2.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절차에 대하여 질의

【질 의】

○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조달청과 재정부 유권해석을 보면 “계속비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해 총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추가 간접비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인 ○○군 수요의 하수처리장을 준공하고 준공대가 수령전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1) 준공대가 지급전 까지 조정 신청한 추가간접비를 반영한 계약금액조정 변경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난후 추가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준공대가를 같이 수령하여야만 하는지?
- 2) 아니면,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액을 확정하는데 절차상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시공완료된 공사에 대한 준공대가 신청전에 조정신청을 한후 당해 계약금액 조정 대상액을 제외한 시공완료된 공사에 대한 준공대가를 우선 수령하고, 추후 동 계약금액조정액이 확정되면 당해조정액을 신청하여 수령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3. 재료비의 원가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포함 여부 질의

【질 의】

1. 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료비의 원가산정시 일반관리비및 이윤에 대한 질문을 하고져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02.01.30일 ○○문화체육센타를 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도급변경 진행중 당초 도급원가계산서에 사급자재비 항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결과시 당초 사급자재비 항목이 없는 비목을 사급자재비(변기, 세면기, 수목자재 등)로 변경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시공사에서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403호(회계통첩) 2005.01.27』 내용을 근거로 일상감사결과가 회계통첩과 대치되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함.

(질 문)

시설공사중 도급설계 변경시 당초원가계산서에 사급자재비 항목이 없는 비목을 일상감사 결과시 사급자재비로 변경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 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 바, 시공사에서는 “재정정책과-403호(회계통첩)” 내용과 대치되므로 사급자재비라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거래실례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물품등을 구매·제조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별도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작성된 공사의 경우에는 사급자재는 직접 재료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4. 청소용역비 단가산정 관련 질의

【질 의】

- 청소용역비 인건비를 산출할 때 기준 단가를 어디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협회에서 노무비를 고시하던데 청소용역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 또한 용역비 총 산출을 할때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경비 등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회 신】

- 물품·공사·용역 등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 귀 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5. 용역계약 및 대가지급 관련 질의

【질 의】

- 저희 보건지소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 중(4.1~5.30까지)에 있는데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총공사비 3억원중 3천만원을 금번(6월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공사비가 줄어듬으로써 용역계약금액을 감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2. 당초계약금액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3. 아니면 다른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요

【회 신】

- 기술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계약금액조정 사유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 작업지시, 과업의 변경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16. 입찰무효로 재입찰여부 재질의

【질 의】

○ 전 질의건은 적격심사공사건으로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료(95점) 공문으로 적격심사결과(적격)를 통보(팩스)를 하여 계약할 시점에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1년 전쯤에 법인명을 변경 등기하였으나, 조달청등록사항을 변경치 않고 이전명칭으로 전자입찰하였기 낙찰자의 원인무효로 입찰무효가 되어 다음과 같이 재입찰여부를 문의 드렸는 바,

- 1) 적격심사결과 적격(낙찰)자로 계약할 것을 통보한 것은 낙찰자결정을 한 것이므로 입찰전체를 무효로 종결 처리하고 재입찰 실시
- 2) 적격(낙찰)자 통보를 하였더라도 계약이전이므로 1순위자만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적격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 결정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행자부 예규 제160호) 제8조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순위업체가 입찰무효에 해당된다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에 대한 재질의]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1-4-2, 1-5-3, 1-5-8호와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10537(2004.9.4)호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던 바, 위 답변중 “부적격자 판명”은 적격심사요건이 맞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질의에 의한 입찰무효”는 적격심사는 통과되어 낙

찰 통보하였으나 입찰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어 입찰자체가 무효로 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낙찰자 선언 후 입찰무효가 판명되었다면 유권해석사례처럼(질의 1항)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만약 낙찰자결정(적격낙찰통보)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결정을 한 후 낙찰자 입찰무효사유가 아닌 적격심사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면 (질의 2항)과 같이 귀기관의 답변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국계법령을 준용하는 지방기관으로 국계법 유권해석사례와 상충되오니 이에 질의합니다.

【회 신】

○ 귀 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과 국가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의문으로 지난 2003. 11. 24일자 회계통첩 『지자체 계약업무처리 법령 적용 철저(행자부 문서번호재정과-2490)』에서 아래와 같이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동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개별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되 지방재정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우리부에서는 국가기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적용기준과 다른 국가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향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 처리시에는 지방재정법령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우리부에서 시달하는 지침·예규·훈령·회계통첩·유권해석 등만이 그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